

비봉산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11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04. .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청풍호반 관광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설치한 항공레포츠 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코자함

2. 위탁 필요성

- 청풍호반의 관광 레포츠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페러글라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(법인)에 위탁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
- 관광 제천 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항공레포츠 전문인들을 통한 운영 및 관리로 시설의 활용성과 관리 편의를 높이고자 함

3. 위탁개요

- 위탁운영시설
 - 시설명 : 제천비봉산 활공장
 - 위치 :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산 2번지(비봉산 일원)
 - 시설규모
 - 활공시설 : 활공장 1개소(318평), 착륙장 1개소

- 이동시설 : 모노레일 1,280m, 차량 4대(차고지 포함)
- 부대시설 : 주차장, 편의시설(이동화장실 2개, 등의자 5개, 휴지통 2개 등)

○ 위탁운영조건

- 수탁 수수료 : 무 료(비 수익시설임)
- 운영 관리비 : 수탁자 부담(이동시설 운영 관리 유지비)
- 운영비 지원 : 없 음
 - 다만 전국단위 대회 유치 시 상호협의에 의해 경비지원 가능
- 위탁관리기간 : 3년간

4. 수탁자 선정기준

- 활공과 관련한 교육, 동호인활동, 장비의 보급 등 항공 레포츠 관련법인 또는 협회
- 활공장 조성목적에 부합되고, 제천의 관광레포츠 홍보가 가능한 전문단체(법인)
-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 없이 자체부담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체(법인)

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) 제3항,
동법 제135조(공공시설) 제2항
- 지방재정법 제109조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 제2항
-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 제1항

-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 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.
 -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
 -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,
 -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) 등

6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사본
- 사업추진현황

관 계 법령

지방자치법

제95조(사무의 위임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,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35조(공공시설)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

제109조(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) ①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5조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등 단순행정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,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,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 대상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사 업 조 성 현 황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제천비봉산 활공장 조성
- 위치 :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산2번지(비봉산 일원)
- 사업량
 - 활공시설 : 활공장 1개소(318평), 착륙장 1개소
 - 이동시설 : 모노레일 1,280m, 차량 4대(차고지포함)
 - 부대시설 : 주차장, 이동화장실 2개, 등의자 5개,
휴지통 2개, 이정표 3개
- 사업비 : 600 백만원
 - 활공장조성 : 258 백만원
 - 이동시설 : 320 백만원
 - 설계 및기타 : 22 백만원
- 사업기간 : 2005. 12. 21 ~ 2006. 11. 16.

2. 추진현황

- 기본 및 실시 설계 : 2005. 5 ~ 10.
- 사업집행 : 2005. 11. 13
- 시공자 선정 : 2005. 12. 15
- 사업 착수 : 2005. 12. 21
- 비봉산활공장 조성 준공 : 2006. 10. 16
- 이동시설 준공(모노레일) : 2006. 11. 16